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930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법률안 중 1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72	서명옥	'25. 12. 30.	'26. 3.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16	김윤	'26. 3. 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 직접회부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3. 1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 3. 13.)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유효기간)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또는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